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 취업 영주권 진행 상황

### 노동허가증 먼저 승인되는 경우 있어 여행허가증 표기 확인해야

&lt;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gt;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영주권을 진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처에 따라 처리되는 속도가 다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영주권이 진행되는 속도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발급 등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영주권 진행은 일반적으로 1단계 노동국 청원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 이주허가서(I-140),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단계를 처리하는 노동국은 임금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을 넘기면서 조금씩 지연을 보이고,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된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감사요청이 없을 경우 5~6개월,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총 10~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1단계 심사인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는 영주권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고용이 필요한 직책에 자격이 되는 자국민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도 된다는 승인이다.

이렇게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다음으로 고용주 회사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과 직원의 자격을 검토하는 I-140, 그리고 개인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하는 취업영주권 문호는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서류가 접수되는 이민국에 따라 다소 처리 기간에 차이를 보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국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는다.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처는 선택사항이 아니나, 근무지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신청자의 거주지는 어느 주인지, 그리고 I-140과 I-485를 별도로 접수하는지, 아니면 함께 접수하는지, 그리고 급행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변동된다. 주로 뉴욕·뉴저지에서 근무할 예정이거나 혹은 거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서류가 네브래스카 혹은 텍사스주에 위치한 이민국으로 접수가 된다.

취업영주권 문호에 대기자가 없어 많은 신청자가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면서, I-140은 급행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근무지가 뉴욕이라면 네브래스카 이민국으로, 근무지가 뉴저지인 경우라면 텍사스에 있는 이민국으로 접수가 된다. 현재 이민국에 공지된 처리 기간을 보면 I-485의 처리 기간이 네브래스카 이민국은 12개월, 텍사는 10개월 선이다. 물론, 보충자료 요청이 있거나 인터뷰가 잡히면 승인까지 추가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다면, 뉴욕·뉴저지 거주자들의 I-485는 시카고에 있는 이민국으로 접수될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네브래스카나 텍사스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이관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어떤 특정 이민국으로 접수가 돼야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많은 취업영주권의 I-485 신청서가 미주리주에 있는

National Benefit Center로 이관되고 있다.

취업영주권 최종 승인이 지연되면서 콤보카드로 지정되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의 발급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 또한 발급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요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이 함께 콤보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증만 먼저 승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카드를 수신한 후 노동카드 하단에 여행허가증이 함께 승인되었다는 표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허가증이 함께 승인된 경우라면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승인되는 I-131 승인서를 기다려야 한다. 특정 신청자의 경우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므로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 취업 영주권 진행 상황

### 노동허가증 먼저 승인되는 경우 있어 여행허가증 표기 확인해야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영주권을 진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처에 따라 처리되는 속도가 다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영주권이 진행되는 속도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발급 등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취업영주권 진행은 일반적으로 1단계 노동국 청원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 이주허가서(I-140),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단계를 처리하는 노동국은 임금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을 넘기면서 조금씩 지연을 보이고,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된 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감사요청이 없을 경우 5~6개월,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총 10~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1단계 심사인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는 영주권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고용이 필요한 직책에 자격이 되는 자국민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해도 된다는 승인이다.

이렇게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다음으로 고용주 회사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과 직원의 자격을 검토하는 I-140, 그리고 개인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하는 취업영주권 문호는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서류가 접수되는 이민국에 따라 다소 처리 기간에 차이를 보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국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는다.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처는 선택사항이 아니나, 근무지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신청자의 거주지는 어느 주인지, 그리고 I-140과 I-485를 별도로 접수하는지, 아니면 함께 접수하는지, 그리고 급행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변동된다. 주로 뉴욕·뉴저지에서 근무할 예정이거나 혹은 거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서류가 네브래스카 혹은 텍사스주에 위치한 이민국으로 접수가 된다.

취업영주권 문호에 대기자가 없어 많은 신청자가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면서, I-140은 급행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근무지가 뉴욕이라면 네브래스카 이민국으로, 근무지가 뉴저지인 경우라면 텍사스에 있는 이민국으로 접수가 된다. 현재 이민국에 공지된 처리 기간을 보면 I-485의 처리 기간이 네브래스카 이민국은 12개월, 텍사는 10개월 선이다. 물론, 보충자료 요청이 있거나 인터뷰가 잡히면 승인까지 추가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다면, 뉴욕·뉴저지 거주자들의 I-485는 시카고에 있는 이민국으로 접수될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네브래스카나 텍사스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이관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 어떤 특정 이민국으로 접수가 돼야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많은 취업영주권의 I-485 신청서가 미주리주에 있는

National Benefit Center로 이관되고 있다.

취업영주권 최종 승인이 지연되면서 콤보카드로 지정되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의 발급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으나, 이 또한 발급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요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이 함께 콤보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증만 먼저 승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카드를 수신한 후 노동카드 하단에 여행허가증이 함께 승인되었다는 표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허가증이 함께 승인된 경우라면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승인되는 I-131 승인서를 기다려야 한다. 특정 신청자의 경우 여행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므로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